

CONTACT



변호사 정환

T: 02.772.4940
E: hwan.jeong@leeko.com



변호사 선정호

T: 02.772.4676
E: jeongho.sun@leeko.com



변호사 이미지

T: 02.772.4752
E: miji.lee@leeko.com



변호사 김지훈

T: 02.772.5978
E: jihoon.kim2@leeko.com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개선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이하, CP) 도입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2024년 3월 5일부터 2024년 4월 15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이하, 고시) 또한 2024년 3월 5일부터 2024년 3월 25일까지의 행정예고기간 후에 시행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은 CP 운영 우수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 등 혜택 부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24. 6. 21. 시행 예정)을 위한 후속조치로,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기준 및 절차 마련, 과징금 감경 등 유인 부여 기준 및 감경을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이번 제·개정안의 추진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 및 예상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행령 개정 및 고시 제정의 추진 배경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기업 내부의 준법시스템으로 2001년경 민간 주도로 도입되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2006년경 CP 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의 CP 운영성과에 따라 차등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CP 등급평가 체도를 운영하여 왔으나, CP 제도의 근거가 법률이 아닌 예규에 규정되어 있던 이유로 그 혜택이 크지 않아 그동안 기업들이 CP 도입 및 운영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해 6월 공정거래법에 CP제도, CP 운영 등급평가 및 CP 우수 운영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 포상 등의 지원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개정된 내용은 오는 6월 21일 시행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 및 고시 제정은 개정된 CP 제도의 구체적 절차 및 요건, 그에 따른 혜택 등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2. CP 제도 개선 관련 주요 내용

시행령 개정안은 (1) CP 평가 기준·절차, (2) 평가 등급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20% 이내), (3) 평가기관(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고시 제정안은 (1) 구체적 평가 기준, (2) 평가비용, (3) 과징금 감경 등의 기준·정도 등 CP 평가 및 유인 부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개정안에 따르면, CP 도입 요건을 갖추고 1년 이상 운영한 사업자가 AA등급 이상을 받으면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하여 10%(AA) 또는 15%(AAA)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사개시 전에 CP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당해 법 위반을 탐지·중단하였음을 사업자가 입증하면 5%까지 추가 감경이 가능해 최대 20%까지 과징금 감경이 가능합니다. 과징금 감경 혜택이 적용되는 AA등급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서류·현장평가 이외에 심층 면접 평가를 추가하여 더욱 엄격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절차도 개선되었습니다.

한편, (i) CP 담당자가 법 위반행위에 개입한 경우, (ii) 법 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iii) 가격담합 등 경쟁제한성이 큰 부당 공동행위, (iv) 고위 임원이 법 위반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과징금 감경 제외 요건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내용	내용
<p>평가기준 및 절차 (시행령 제91조의2, 고시 제3조, 제10조, 제12조부터 18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신청요건: CP 도입요건 갖추고, 1년 이상 운영한 사업자 ■ 평가기준: 직전년도 1년간의 실적자료에 대해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평가기준을 고시 [별표2]에 규정 ■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별 가중치를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적용 ■ 과징금 감경 가능 등급(AA, 80점) 이상인 경우 심층면접 평가 추가 ■ 등급 보류·미부여 및 등급조정·무효 사유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위반 혐의로 안건 상정 중인 경우 등 등급 부여에 부적절 사유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 등급 보류 및 미부여 가능 ■ 유효기간 내 조사활동 방해로 처벌받은 경우 무효로 함 ■ 평가결과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결과를 사업자에 통지하되, 등급부여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
<p>과징금 감경 등 혜택 부여 기준 및 감경을 규정 (시행령 제91조의3, 고시 제19조부터 제23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조치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유효기간 내 1회 공표명령 감경 ■ 과징금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유효기간 내 1회 과징금 고시상의 2차 조정 단계에서 10%(AA) 또는 15%(AAA) 이내의 과징금 감경 ■ 조사개시 전에 CP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당해 법위반을 탐지하여 중단하였음을 사업자가 입증한 경우에는 5% 범위에서 추가 감경 ■ 혜택 부여 적용제외 요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CP 담당자가 위반행위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② 위반행위가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③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법 제40조 제1항 제1, 2, 3, 4, 8호에 해당하는 행위) ④ 위반사업자의 이사 또는 그 이상의 고위 임원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p>평가비용 및 감면 대상 기준 마련 (시행령 제91조의4, 고시 제11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평가신청 기업이 부담하도록 규정 ■ 신규평가 신청 시 660만 원, 연속평가 신청 시 440만 원 ■ 비용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연도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인 경우 신규평가 신청시 330만 원, 연속평가 신청시 220만 원 ■ 중소기업 및 직전년도 평가결과 최우수(AAA) 기업은 면제
<p>평가기관 지정 기준 등 마련 (시행령 제91조의5, 고시 제4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기관: 공정거래조정원 또는 공정거래 관련 인증. 평가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기관을 평가기관으로 지정 ■ 지정기관 고시: 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도록 하고, 고시에서 공정거래조정원을 평가기관으로 지정

3. 예상되는 효과 및 시사점

그동안 법적 근거의 부재로 도입·운영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어려웠던 CP 제도는 이번 공정거래법과 시행령 및 고시의 제·개정으로 운영 방법, 평가 기준 및 과징금 감경 등 지원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CP 평가 및 유인 부여 등 제반 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어 기업들이 CP 제도를 이용할 유인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공정위는 앞으로 (i) CP 도입 및 운영 비용 감축, (ii) 등급평가 신청 간소화를 통한 기업 부담의 최소화 (iii) CP 우수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 혜택 및 신용보증기금 수수료율 인하, 가맹·대리점 등 협약이행평가에서 가점 부여 등을 통해 CP 운영 기업들에게 보다 더 많은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상의 점을 고려하면, 아직 CP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 입장에서는 개정된 법령에 따른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CP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미 CP가 마련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개정된 법령에 따라 등급 조정 및 혜택 부여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 그룹은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관련 입법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해당 이슈 검토가 필요한 국내·외 고객에게 가장 최신의 심층적인 법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 그룹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뉴스레터 더 보기